

< 용인수지우체국 공고 제2019-1호 >

2019년도 제1회 용인수지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용인수지우체국에서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17.

용인수지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국 (근무지역)	담당업무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1명	용인수지우체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일부)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기타 부대업무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수당

- 기본급 : 1,615,600 원

- 수당 : 운전수당, 직무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 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58조제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다.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용인수지우체국 근무가 가능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시험 방법

채용분야 \ 시험단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체력검정)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상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적격/부적격)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3종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20kg소포상자 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붙임참조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우정사업본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경인지방 우정청, 용인수지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05.22.(수) ~ 05.24.(금), 09:00~18:00까지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용인수지우체국 3층 지원과 인사담당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변경

가. 모집공고 : 2019.05.17.(금) ~ 2019.05.24.(금)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05.22.(수) ~ 2019.05.24.(금)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05.28.(화)

라. 실기 및 면접시험 : 2019.05.30.(목)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9.06.04.(화)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용인수지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아.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용인수지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용인수지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용인수지우체국 방문신청, 팩스(0505-005-1341) 또는 이메일 (wnstjq1217@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용인수지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06.30.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순으로 서열화 하여 결위 발생시 성적순으로 채용되므로, 합격자 중 성적 후순위자는 채용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채용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적게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수지우체국 지원과(031-270-0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력검사 기준표

성별/종목/연령대		합격	불합격
남자	윗몸 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25 이상	24 이하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1분)	20 이상	19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40초 10m씩 왕복)	40초 이내	40초 초과
여자	윗몸 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0 이상	9 이하
	팔굽혀 펴기 (기준시간: 1분)	10 이상	9 이하
	소포상자 이동하기(20kg) (기준시간: 1분 10m씩 왕복)	1분 이내	1분 초과

【붙임2】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윗몸 일으키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손은 머리 뒤로 깎지껴 잡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깎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매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 깎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남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cm 높이의 봉을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여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마루에 대고 엎드려 30cm 높이의 봉을 손으로 짚어 팔을 봉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소포상자 이동하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10m를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도착 장소에 준비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10m를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

※ 응시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붙임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인수지우체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